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의료행위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3. 24. 선고 2019가단21196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의료진이 충분한 이학적 검사나 추가적인 검사, 영상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타과 진료를 의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망인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망인은 2017. 11. 하순경 아랫배의 통증과 질출혈이 있었고, 2017. 11. 30. 위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자궁경부세포검사, 자궁경부 촬영술을 시행하였다. 2017. 12. 2. 망인에 대하여 자궁내막소파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조직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망인의 질출혈이 폐경으로 인한 위축성 질환이라고 판단하고 2017. 12. 7.부터 2018. 2. 10.경까지 4회, 2018. 4. 7.부터 2018. 4. 14.까지 2회에 걸쳐 망인에게 호르몬 질정제 등의 치료를 하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하였고, 위와 같은 치료과정에서 망인은 아랫배 통증과 소량의 출혈 또는 출혈 증상을 호소하였다.

의료진은 2018. 4. 14. 망인에게 자궁적출술 수술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망인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달 16. 망인에게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임파선 결절이 확인되어 망인에게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함을 설명 후 전원 조치하였다. 이후 망인은 소외 일산백병원에서 자궁내막암 및 다발성 전이를 진단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질출혈과 복통을 호소하는 망인의 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좌측 쇄골상부의 림프절 종대에 대한 충분한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망인의 질출혈과 복통의 원인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사와 영상검사(CT/MRI)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복통의 원인이 질출혈과는 별개의 질환인지 여부에 대하여 타과 진료를 의뢰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망인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의 자궁내막암이 4기에 이른



상태로 뒤늦게 진단되어 자궁내막암에 대한 치료가 5개월 이상 늦어지는 바람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같은 해 12. 2. 자궁내막 소파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같은 달 5.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이전에 관찰되던 저음영 부분이 줄어들었음을 확인 후 초음파 결과와 함께 조직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음을 설명해 주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와 포도당수치가 증가해있음을 설명한 후 내과 진료를 권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출혈이 폐경으로 인한 위축성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호르몬 질정제 치료를 시작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했음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2018. 4. 16.경 망인의 좌측 쇄골상부 등의 림프절 종대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로부터 약 2개월 내지 5개월 전으로서 망인의 최초 내원시인 2017. 11. 30.경부터 호르몬 질정제 치료가 계속되던 2018. 2. 10.경까지의 기간 중에 이미 좌측 쇄골상부 등의 림프절 종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2018. 2. 1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아랫배 통증과 소량 출혈을 호소하면서 진료받은 후, 약 2개월 동안 피고병원을 내원하지 않다가 2018. 4. 7. 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8. 4. 14. 또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바, 좌측 쇄골상부 등의 다발성 림프절 종대와 같은 증상이 2018. 2. 10.경까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병원 의료진이 2017. 12. 5. 망인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상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암을 의심하여 좌측 쇄골상부 등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질출혈의 경우 우선 진찰을 통해 출혈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자궁출혈이 의심되면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고, 자궁소파술을 통해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직후인 2017. 12. 2. 소파술을 이용한 자궁내막조직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암을 의심하여 망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을 통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확립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판결은 감정서에서 ‘산부인과 내원 환자의 경우에 질경검사 및 골반 진찰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 이학적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법무법인이 주장한 대로 위 감정서 기재를 ‘산부인과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체 전반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익 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jibae@lkpartner.co.kr